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월 2일

군산시 규칙 제497호

#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30, 2009.06.23, 2009.12.29, 2010.02.18, 2010.07.15>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환경위생 과 장	환경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 종합계획</li> <li>○ 환경보존사업 종합계획 수립</li> <li>○ 환경영향평가 및 타법 검토(협의)업무 전반</li> <li>○ 환경보전 홍보교육 및 행사관련 업무</li> <li>○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li> <li>○ 자연보호 제반 업무</li> <li>○ 천연가스 보급 사업</li> <li>○ 생태공원(학습장) 조성업무 추진</li> <li>○ 습지보전사업 추진(GEF공동)</li> <li>○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환경행정협의회 지원</li> <li>○ 직도사격장 환경영향 조사</li> <li>○ 야생 조수보호와 수렵 면허발급 및 단속</li> <li>○ 생태탐방로 및 둘레길 조성사업</li> <li>○ 푸른군산21 추진협의회 운영</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기후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li> <li>○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전략추진</li> <li>○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li> <li>○ 탄소포인트제 운영</li> <l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li> <li>○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전개</li> <li>○ 비행장 소음 제반업무</li> <li>○ 대기오염측정망 운영</li> <li>○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li> <li>○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단속</li> <li>○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li> <li>○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관리</li> <li>○ 환경신문고 관련업무</li> </ul>
	환경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계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오염총량관리제 제반사항 추진</li> <li>○ 사업장별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할당·관리</li> <li>○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신고 및 지도단속</li> <li>○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및 규제기준 설정 통제</li> <li>○ 악취발생사업장 지도단속</li> <li>○ 대기 및 소음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li> <li>○ 비행장 토양오염 처리</li> <li>○ 수질오염측정망(하천, 호소, 지하수)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초시설(농공단지 등) 관리</li> <li>○ 수질환경개선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li> <li>○ 농공단지 입주기업 폐수처리 관련 협의</li> <li>○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원인분석(조치)</li> <li>○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 지도단속</li> <li>○ 토양오염시설 신고(관리) 및 지도단속</li> <li>○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li> </ul>
	<p>공중위생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li> <li>○ 이·미용사 면허 관리</li> <li>○ 공중위생업소 신고 관리</li> <li>○ 공중위생관련업소 지도 단속</li> <li>○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관리</li> <li>○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관리</li> <li>○ 다중이용시설(약수터) 위생 관리</li> <li>○ 음반대여 및 판매업 지도단속</li> <li>○ 노래연습장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li> <li>○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PC방)등록관리 및 지도단속</li> <li>○ 음반,비디오,게임물 판매업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li> <li>○ 시청물 제공업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li> <li>○ 공중위생,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li> <li>○ 공중위생, 유통관련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li> </ul>
	<p>식품위생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li> <li>○ 식품 접객업 허가 및 신고 관리</li> <li>○ 향토 전통 음식 발굴 육성</li> <li>○ 식품위생 관련단체 지도 관리</li> <li>○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li> <li>○ 음식문화 개선 업무</li> <li>○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관리</li> <li>○ 모범업소 지정 관리</li> <li>○ 식품진흥기금관리</li> <li>○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관리</li> <li>○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지도단속 및 무허가 관리</li> <li>○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li> <li>○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li> </ul>
	<p>식품안전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li> <li>○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위해식품 관리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li> <li>○ 식품제조·가공업소등 신고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li> <li>○ 식중독 예방관리</li> <li>○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위생지도 관리</li> <li>○ 유통식품 안전성 수거 검사</li> <li>○ 식품제조·가공업소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징수</li> <li>○ 식품제조·가공업소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제조·가공업소등 위생교육 관리</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신고포상금 운영관리</li> <li>○ 조리사 면허증 발급 등 관리</li> <li>○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지도관리</li> </ul>

<생략>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건설과장	도로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li> <li>○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관리처분 및 등기</li> <li>○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li> <li>○ 도로·구거부지 허가 및 점용료 과징</li> <li>○ 도로·구거부지 용도 폐지 승인</li> <li>○ 도로공사 용지매수 지장물 보상</li> <li>○ 도로 무단점용 단속 업무</li> <li>○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조정</li> <li>○ 도로정비 수로원 관리</li> <li>○ 노점상 지도단속 및 관리</li> <li>○ 가로 환경정비</li> <li>○ 과적차량 단속업무</li> <li>○ 접도구역 관리</li> <li>○ 철도건널목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도로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 및 확장</li> <li>○ 도시계획외의 도로개설 확장 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li> <li>○ 기타 도로에 관련한 사항</li> </ul>
	도로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포장 보수</li> <li>○ 시의 군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시행 감독</li> <li>○ 도로 및 교량 공사의 시행 및 감독</li> <li>○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및 감독</li> <li>○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li> </ul>
	농촌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수 개발</li> <li>○ 경지정리 사업</li> <li>○ 관개시설 설치 및 개·보수</li> <li>○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li> <li>○ 농지개량 사업의 조사 측량</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간 허가 및 지도</li> <li>○ 각종 농지개량 사업의 조사, 집행, 감독</li> <li>○ 농업기반조성사업 용지보상 관련 사항</li> <li>○ 국유재산(농림부 소관) 관리처분 및 등기</li> <li>○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li> <li>○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li> <li>○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계획수립 및 추진</li> <li>○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li> <li>○ 농업기반시설(저수지,방조제,양수장등)등록 및 유지관리</li> <li>○ 양수기 유지관리</li> <li>○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li> </ul>
	<p>광고물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계시대 설치 및 관리</li> <li>○ 옥외광고물 전수조사</li> <li>○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li> <li>○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li> <li>○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li> <li>○ 옥외광고업 허가</li> <li>○ 광고물 일반 서무</li> <li>○ 불법현수막 벽보 제거</li> <li>○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재교부</li> <li>○ 유동광고물 신고수리</li> <li>○ 불법광고물 정비단속</li> <li>○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li> </ul>
	<p>도시조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조명 주요업무 계획 수립</li> <li>○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계획 수립</li> <li>○ 보안등 시설관리 및 개량업무</li> <li>○ 각종 도로 전기시설(터널,육교등)관리</li> <li>○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li> <li>○ 보안등시설 현장조사</li> <li>○ 가로등 및 보안등 순찰 점검</li> <li>○ 각종 기자재 수불 관리</li> </ul>
	<p>자전거정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도로 계획 및 추진</li> <li>○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li> <li>○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사업추진</li> <li>○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추진</li> <li>○ 자전거관련조례·위원회 운영</li> </ul>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 1】</b>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소관]			<b>【별표 1】</b>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환경 위생 과장	자전거 정책 업무 분야	○ <u>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u> ○ <u>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사업추진</u> ○ <u>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추진</u> ○ <u>자전거관련조례·위원회 운영</u>	<del>삭 제</del>	<del>삭 제</del>	<del>삭 제</del>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설 과장	도로 계획 업무 분야	○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 및 확장 ○ 도시계획외의 도로개설 확장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u>자전거도로 계획 및 추진</u> ○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 기타 도로에 관련한 사항	건설 과장	도로 계획 업무 분야	○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 및 확장 ○ 도시계획외의 도로개설 확장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del>삭 제</del> ○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 기타 도로에 관련한 사항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설 과장	도시 조명 업무 분야	○ 도로조명 주요업무 계획 수립 ○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계획 수립 ○ 보안등 시설관리 및 개량업무 ○ 각종 도로 전기시설(터널, 육교 등)관리 ○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 보안등시설 현장조사 ○ 가로등 및 보안등 순찰 점검 ○ 각종 기자재 수불 관리	건설 과장	도시 조명 업무 분야	○ 도로조명 주요업무 계획 수립 ○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계획 수립 ○ 보안등 시설관리 및 개량업무 ○ 각종 도로 전기시설(터널, 육교 등)관리 ○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 보안등시설 현장조사 ○ 가로등 및 보안등 순찰 점검 ○ 각종 기자재 수불 관리
	신설	신설		자전거 정책 업무 분야	○ <u>자전거도로 계획 및 추진</u> ○ <u>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u> ○ <u>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사업추진</u> ○ <u>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추진</u> ○ <u>자전거관련조례·위원회 운영</u>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월 2일

군산시 규칙 제498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급별	직렬별										
총괄		1331	718	25	94	41	154	13	118	168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080	609	18	71	1	99	12	104	166	
3 급	소 계	1	1								
	행정	1	1								
4 급	소 계	8	4	1	1		2				
	행정	3	1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5 급	소 계	73	33	3	3		7	1	10	16	
	행정	16	14				2				
	해양수산	1	1								
	의무	1			1						
	시설	3	3								
	보건·의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별정	3		3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	3	3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환경	1	1								
	행정·통신	1	1								
	보·환·공	1	1								
	행·농·보	1									1
	행·농·녹	1							1		
	행·농·환	1							1		
	행·보·간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시·환	1					1				
	행·시·공	2									2
	행·환·녹	1					1				
	행·농·해수	1	1								
	행·사회·시	4									4
	행·사회·보	2									2
	행·사회·의기	1									1
	행·농·공	1							1		
	행·농·간	2							2		

	행·보·의기	1							1	
	행·시·사서	2							2	
	행·시·의기	1							1	
	행·시·통	1							1	
	행·농·시·해수	2					1	1		
	행·농·공·환	1						1		
	행·농·간·녹	1						1		
	행·농·보·환	1						1		
	행·사회·농·공	1						1		
6 급	소 계	249	152	6	10		25	3	30	23
	행정	75	52	3			7			1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전산	1	1							
	공업	2					2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시설	18	16				2			
	공업·시설	3	1				2			
	농업·시설	1	1							
	보건·식품	1	1							
	보건·간호	1			1					
	해양수산·환경	1	1							
	녹지·시설	2	2							
	전산·통신	1	1							
	시설·전산	1	1							
	농업·수의	2	2							
	행정·시설	21	19				2			
	행정·공업	5	2				2			1
	행정·농업	18	3					1	12	2
	행정·별정	4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사서	3					3			
	행정·세무	9	9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녹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30	13						10	7	
행정·환경	3	2					1			
공업·환경	4	2				2				
보건·환경	1	1								
보·간·의기	7			7						
보·환·공	2	1				1				
시·환·공	2					2				
행·농·시	3						1	2		
행·농·해수	2	1						1		

	행·농·녹	2						2		
	행·보·간	1			1					
	행·보·환	1	1							
	행·전산·통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환·시	1	1							
	행·농·시·별	1		1						
7 급	소 계	344	208	5	20	1	32	4	29	45
	행정	136	88	4	1		11	1	5	26
	세무	2	2							
	사회복지	18						1	8	9
	전산	1	1							
	사서	5					5			
	공업	9	2				7			
	농업	7	7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6	6							
	보건	8	2		5		1			
	간호	6			5		1			
	환경	6	5				1			
	시설	41	36	1			4			
	방송통신	2	2							
	식품위생	1	1							
	보건·식품	1	1							
	행정·시설	12	5					1	6	
	행정·농업	13	1			1		1	10	
	행정·별정	2	2							
	행정·사회	20	15							5
	행정·세무	23	18							5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전산	3	3							
	행정·환경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	1	1								
공업·환경	3	2				1				
보·간·의기	9			9						
공·환·보	1					1				
8 급	소 계	267	149	3	30		24	2	17	42
	행정	104	59	2			7	1	2	33
	세무	4	4							
	사회복지	9	1						2	6
	전산	3	2	1						
	사서	3					3			
	공업	10	6				4			
	녹지	3	3							
	농업	1	1							
	해양수산	6	6							

	보건	17	5		12					
	의료기술	9			9					
	간호	2			2					
	환경	3	3							
	시설	34	26			7		1		
	방송통신	2	2							
	세무·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1	6					5		
	행정·농업	10					1	7	2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	13	12						1	
	행정·세무	9	9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3			3					
	전산·통신	1	1							
	공업·환경	2				2				
	간호·의기	3			3					
9 급	소 계	138	62		7	9	2	18	40	
	행정	50	15			2	1	9	23	
	세무	10	10							
	사회복지	33	7				1	8	17	
	전산	2	2							
	사서	5				5				
	공업	3	3							
	농업	2	1					1		
	녹지	2	2							
	보건	8	1		6	1				
	의료기술	1			1					
	환경	2	2							
	시설	19	18			1				
	방송통신	1	1							
연구직	계	4			3	1				
연구사	소 계	4			3	1				
	환경연구사	1			1					
	학예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32			32					
지도관	소 계	3			3					
	농·생지도관	3			3					
지도사	소 계	29			29					
	농촌지도	29			29					
기능직	계	182	99	7	5	3	51	1	14	2
6 급	소 계	7	6						1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운전	1	1							
	사무	1	1							
	선박항해	2	1					1		
7급	소 계	29	18		1		8		2	
	통신	1	1							
	전기	1					1			
	기계	6	2				4			
	선박기관	2	1						1	
	조무	4	2				2			
	운전	7	6		1					
	사무	5	4				1			
	선박항해	3	2						1	
8급	소 계	40	24	1	2	1	11		1	
	통신	2	2							
	건축	1	1							
	전기	3	1				2			
	기계	8	4				4			
	선박항해	3	2						1	
	선박기관	2	2							
	조무	2	1				1			
	전화상담	1	1							
	운전	12	9		1	1	1			
	열관리	3			1		2			
	위생	1	1							
	사무	2		1			1			
9급	소 계	58	33	4	1	1	15		4	
	통신	2	1	1						
	전기	6	3				3			
	기계	8	4	1			3			
	선박항해	1							1	
	조무	1	1							
	전화상담	2	2							
	농림	1				1				
	운전	7	3	1	1		2			
	열관리	4	2				2			
	화공	1					1			
	위생	1	1							
	사무	19	16	1			2			
	사육	2					2			
	사무·조무	3							3	
10급	소 계	48	18	2	1	1	17	1	6	2
	전기	1					1			
	기계	3	1				2			
	조무	6	1			1	4			
	운전	2	1	1						
	열관리	2					2			
	위생	3					3			

	사무	22	15	1	1		5				
	사무·조무	9						1	6	2	
별정직	계	32	9		18	2	3				
6급	소 계	3	3								
	홍보연구원	1	1								
	비서	1	1								
	문화재연구원	1	1								
7급	소 계	18			18						
	보건진료원	18			18						
	소 계	11	6			2	3				
	농기계교육교관	2				2					
	보건위생감시원	2	2								
	공기업회계원	1					1				
	수영강사	2					2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박물관운영요원	1	1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별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별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별표]											
[총괄]												[총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기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직급	직렬																						
6급	소계	249	152	6	10		25	3	30	23													
	행정	75	52	3			7			1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전산	1	1																				
	공업	2					2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시설	18	16																				
	공업·시설	3	1				2																
	농업·시설	1	1																				
	보건·식품	1	1																				
	보건·간호	1			1																		
	해양수산환경	1	1																				
	녹지·시설	2	2																				
	전산·통신	1	1																				
	시설·전산	1	1																				
	농업·수의	2	2																				
	행정·시설	21	19				2																
	행정·공업	5	2				2			1													
	행정·농업	18	3						1	12	2												
	행정·별정	4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사서	3					3																
	행정·세무	9	9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녹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30	13							10	7												
	행정·환경	4	3						1														
공업·환경	4	2				2																	
보건·환경	1	1																					
보·간·의기	7			7																			
보·환·공	2	1				1																	
시·환·공	2					2																	
행·농·시	3							1	2														
행농해수	2	1								1													
행·농·녹	2									2													
행·보·간	1			1																			
행·보·환	1	1																					
행·전산·통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농·시·별	1		1																				


**현행 [별 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별 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읍	면	동
총 계		1331	718	25	94	41	154	13	118	168
일반직 계		1064	593	18	71	1	99	12	104	166
7급	소계	342	206	5	20	1	32	4	29	45
	행정	134	86	4	1		11	1	5	26
8급	소계	256	138	3	30		24	2	17	42
	행정	93	48	2			7	1	2	33
9급	소계	135	59		7		9	2	18	40
	행정	47	12				2	1	9	23
기능직 계		198	115	7	5	3	51	1	14	2
7급	소계	31	20		1		8		2	
	사무	7	6				1			
8급	소계	51	35	1	2	1	11		1	
	사무	13	11	1			1			
9급	소계	61	36	4	1	1	15		4	
	사무	22	19	1			2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사업 소	읍	면	동
총 계		1331	718	25	94	41	154	13	118	168
일반직 계		1080	609	18	71	1	99	12	104	166
7급	소계	344	208	5	20	1	32	4	29	45
	행정	136	88	4	1		11	1	5	26
8급	소계	267	149	3	30		24	2	17	42
	행정	104	59	2			7	1	2	33
9급	소계	138	62		7		9	2	18	40
	행정	50	15				2	1	9	23
기능직 계		182	99	7	5	3	51	1	14	2
7급	소계	29	18		1		8		2	
	사무	5	4				1			
8급	소계	40	24	1	2	1	11		1	
	사무	2	0	1			1			
9급	소계	58	33	4	1	1	15		4	
	사무	19	16	1			2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월 2일

군산시 규칙 제499호

##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을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을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당해 기관의”를 “해당 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 총괄 기관”을 “따라 총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를 “따라 차형변경은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 총괄 기관”을 “따라 총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초과한 경우”를 “초과하고,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단, 특수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제14조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요청 하여”를 “요청하여”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소요예산”을 “필요한예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7서식에 의한”을 “제7호서식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하며”를 “따라 서류를 갖추어두어야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32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별·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중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중 기준정수 차형별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중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관용차량관리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관용차량의 <u>관리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영하는 <u>자동차관리법</u>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p> <p>제5조(정수배정) ①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p> <p>②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u>개폐로 인하여</u>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p>	<p><u>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u></p> <p>제1조(목적) ----- ----- <u>관리에</u> ----- ----- ----- .</p> <p>제3조(적용범위) ----- ----- ---- 「<u>자동차관리법</u>」----- ----- ----- . ----- ----- .</p> <p>제5조(정수배정) ①----- ----- <u>따</u> <u>라</u> ----- ----- ----- ----- ----- ----- .</p> <p>②----- ----- <u>개정 또는 폐지로</u> <u>인하여</u> 해당기관 ----- -----</p>

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 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 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조사 또는 외 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 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 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단위기 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 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

-----  
-----.

제7조(정수번호 부여) -----  
-----  
----- 따라 -----  
-----.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  
-----  
----- 그 밖에-----  
-----  
-----  
-----  
-----  
-----  
-----  
-----  
-----.

②----- 규정에 따라 -----  
-----  
-----제1호서식에 따라-----  
-----  
-----.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  
-----.

②-----규정에 따라 -----  
----- 해당기관의 -----

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  
-----  
-----  
-----  
따라 총괄기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따라 차형변경은 해당 -----  
-----  
-----  
-----  
-----.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  
-----  
----- 따라 총괄기관-----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따라 -----  
----- 각호 -----  
----- 의 어느 하나-----  
-----.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생략)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생략)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  
---- 초과하고,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단, 특수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  
-----  
----- 따라 해당 -----  
----- 요청하여 -----  
-----.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  
-----  
----- 호의 어느 하나-----  
-----  
-----

1. · 2. (생략)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 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  
-----  
----- 필요한예산-----  
-----  
-----.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  
-----  
-----  
-----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3. 그 밖에 -----  
-----

제32조(사고보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별표 1]

**차량의 차종별·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안 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배기량 2,000cc 이상 ·시 장 ·부시장 ·시의회의장	차량의 최초등록일부 터 7년간
승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 배기량 2,500cc 미만 ·시 본청	차량의 최초등록일부 터 7년간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cc이상 2,000cc미 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단위부서 · 시 본청 · 시 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부 터 7년간
	소형승용차 (배기량 1,500cc미만 인 차량을 말 한다)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인 차량을 말 한다)	○ 단위부서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 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 다)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 (승차정원 이 16인이상 35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이 15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 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 터 7년간
	구급차	○ 단위부서	
	분뇨차	○ 단위부서	
	진료차	○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 단위부서	
	트럭트랙터	○ 단위부서	
	트레일러	○ 단위부서	
	렉카차	○ 단위부서	
	소방다목적차	○ 단위부서	
	기타소방차	○ 단위부서	
	기타특수차	○ 단위부서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경형 및 중형·다목적 승용차
시 본 청		19대	1대(시장전용 1대)	2대(부시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16대
4급기관장 사 업 소	정원 200명 이상	4대		2대	2대
	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3대		1대	2대
	정원 100명 미만	2대		1대	1대
5급기관장 사 업 소	정원 30명 이상	1대			1대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3대	1대(의장전용 1대)	1대(의전용 1대)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훈련용	교육인원·교육횟수·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군산시 근로자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1월 2일

군산시 규칙 제500호

### 군산시 근로자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근로자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일부분의 “500,000원”를 “1,0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b></p> <p>① (생략)</p> <p>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 1회 500,000원을 지급한다.</p> <p>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p>	<p><b>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u>1,000,000원</u>을 .....</p> <p>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군 산 시 장 문 통 선

2012년 1월 2일

군산시 훈령 제 285 호

##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직속기관 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 계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항만경제국 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복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총계	정무직 계	일반직 계	3급 소계	3급 행정	4급 소계	4급 행정	4급 행정·기술	5급 소계	5급 행정	5급 해양수산	5급 시설	5급 행정·사회
총계		718	52	10	1	1	1	198	48	2	2	3	2	2	1	1	134	29	15	12	19	2	18	14													
정무직	계	1						1	1																												
일반직	계	609	45	7	13	15	10	165	34	20	15	31	23	20	13	9	117	25	14	11	18	19	17	13													
3급	소계	1						1	1																												
	행정	1						1	1																												
4급	소계	4						1	1								1	1																			
	행정	1						1	1																												
	행정·기술	3															1	1																			
5급	소계	33	4	1	1	1	1	8	1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정	14	2	1	1			8	1	1	1	1	1	1	1	1	2	1	1																		
	해양수산	1															1					1															
	시설	3																																			
	행정·사회	3																																			
	행정·시설	6	1				1										1			1																	
	행정·환경	1																																			
	행정·농업	1																1			1																
	보·환·공업	1																																			
	행정·통신	1	1			1																															
	행·농·해수	1																1						1													
	행·시·녹	1																1						1													
	행·환·시	1																																			
6급	소계	152	11	2	3	3	3	37	7	6	3	5	5	5	3	3	33	7	4	3	5	5	5	4													
	행정	52	6	2	2		2	25	6	6	3			4	3	3	12	6	4	2																	
	세무	2						2				2																									
	사회복지	1																																			
	전산	1	1			1																															
	농업	2															2				2																
	녹지	2															2						2														
	해양수산	2															2						2														
	보건	1																																			
	시설	16	1				1																														
	농업·시설	1																																			
	보건·식품	1																																			
	해양수산·환경	1															1						1														
	녹지·시설	2															2							2													
	전산·통신	1	1			1																															
	시설·전산	1																																			
	농업·수의	2															2					2															



	해양수산	6													6			1		5				
	보건	5																						
	환경	3																						
	시설	26	1				1								1							1		
	방송통신	2	2				2																	
	세무·전산	1						1				1												
	행정·전산	1													1	1								
	행정·시설	6																						
	행정·사서	1						1	1															
	행정·사회	12																						
	행정·세무	9						8				5	3		1		1							
	전산·통신	1	1				1																	
9 급	소 계	62	6	1	1	3	1	16	2	1	5	5	2	1	9	2	2		1	1	2	1		
	행정	15	1	1				6	2	1			2	1	4	2					1	1		
	세무	10						10				5	5											
	사회복지	7																						
	전산	2	2			2																		
	공업	3																						
	농업	1													1						1			
	녹지	2													2							2		
	보건	1																						
	환경	2																						
	시설	18	2		1		1								2		2							
	방송통신	1	1			1																		
기능직 계		99	6	2	1	3		31	12	2	8	2	1	4	1	1	17	4	1	1	1	8	1	1
6 급	소 계	6						3	1	2					1						1			
	전기	1						1	1															
	기계	1						1		1														
	조무	1																						
	운전	1						1		1														
	사무	1																						
	선박항해	1													1							1		
7 급	소 계	18						9	5	1	2		1		3							3		
	통신	1						1	1															
	기계	2						1	1															
	선박기관	1													1							1		
	조무	2						1	1															
	운전	6						4	1	1	1		1											
	사무	4						2	1		1													
선박항해	2													2							2			
8 급	소 계	24	1			1		5	2	2		1			5							4	1	
	통신	2																						
	전기	1																						
	기계	4																						
	선박항해	2													2							2		
	선박기관	2													2							2		
	조무	1																						
	전화상담	1	1			1																		
	건축	1						1	1															
운전	9						3			2	1			1							1			

	위생	1					1	1											
	사무																		
9 급	소 계	33	4	2		2	9	3	1	1		1	1	1	3	1	1		1
	통신	1	1	1															
	전기	3																	
	기계	4	1	1										1	1				
	조무	1					1	1											
	전화상담	2	2			2													
	운전	3					1			1				1		1			
	열관리	2					2	2											
	위생	1																	
	사무	16					5	1			1		1	1	1	1	1		
10 급	소 계	18	1		1		5		1	1	1		2		5	3		1	1
	운전	1																	
	기계	1																	
	조무	1																	
	사무	15	1		1		5		1	1	1		2		5	3		1	1
별정직 계		9	1	1			1	1											
6 급	소 계	3	1	1			1	1											
	홍보연구원	1	1	1															
	비서	1					1	1											
	문화재연구원	1																	
7 급	소 계	6																	
	보건위생감시원	2																	
	청소년수련지도사	3																	
	박물관운영요원	1																	
	산업인력요원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직급 별	직렬별	기관별	주민 생활 지원 국 계	주 민 생 활 지 원 과	복 지 지 원 과	여 성 아 동 복 지 과	문 화 체 육 과	관 광 진 흥 과	환 경 위 생 과	자 원 순 환 과	건 설 교 통 국 계	도 시 계 획 과	건 설 과	공 영 사 업 과	건 축 과	교 통 행 정 과	재 난 관 리 과	토 지 정 보 과
			167	27	21	21	24	18	30	26	167	24	35	18	26	25	18	21
			139	26	19	17	18	17	26	16	143	24	24	18	25	18	16	18
3 급	소 계																	
	행 정																	
4 급	소 계	1	1								1	1						
	행 정																	
	행 정·기 술	1	1								1	1						
5 급	소 계	7	1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 정	1				1					1					1		
	해 양 수 산																	
	시 설										3		1		1			1
	행 정·사 회	3	1	1	1													
	행 정·시 설	1						1			3	1		1				1
	행 정·환 경	1							1									
	행 정·농 업																	
	보·환·공 업	1							1									
	행 정·통 신																	
	행·농·해 수																	
	행·시·녹 지																	
	6 급	소 계	34	5	5	5	5	4	6	4	4	37	6	7	4	6	5	4
행 정		5				3	1		1	4						3	1	
세 무																		
사 회 복 지		1	1															
전 산																		
농 업																		
녹 지																		
해 양 수 산																		
보 건		1							1									
시 설		1					1				14	3	2	2	4			3
농 업·시 설											1		1					
보 건·식 품		1							1									
해 양 수 산·환 경																		
녹 지·시 설																		
전 산·통 신																		
시 설·전 산										1							1	
농 업·수 의																		

	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2			1	1			14	3	2	2	2	1	3	1	
	행정·농업																
	행정·세무																
	행정·해양수산																
	행정·녹지																
	행정·공업								1		1						
	행정·전산																
	행정·사회	13	4	5	4												
	행정·환경	2					1	1									
	행정·별정	2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보·환·공업	1						1									
	행·보·환	1						1									
	행·전산·통								1					1			
	행·농·해수																
	행·시·녹	1					1										
	행·환·시								1		1						
7 급	소 계	45	7	7	6	6	4	10	5	44	8	7	5	7	5	6	6
	행정	15	1	1	4	4	3		2	12	1	3	1	1	3	2	1
	세무																
	전산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1						1	
	보건	2						2									
	환경	5						3	2								
	시설	3				2	1			29	7	4	4	5	1	3	5
	방송통신																
	식품위생	1						1									
	보건·식품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별정																
	행정·사회	14	6	6	2												
	행정·세무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전산																
	행정·환경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																
	공업·환경	2						1	1								
8 급	소 계	36	7	4	4	4	6	5	6	39	6	6	6	7	6	3	5
	행정	11	1		1	3	3		3	6		1			3	1	1
	세무																
	사회복지	1		1													
	전산									2					1		1
	공업									5		2	2			1	
	녹지																

	농업																	
	해양수산																	
	보건	5					4	1										
	환경	3					1	2										
	시설	3				1	2		21	6	2	3	5	1	1	3		
	방송통신																	
	세무·전산																	
	행정·전산																	
	행정·시설	1					1		5		1	1	2	1				
	행정·사서																	
	행정·사회	12	6	3	3													
	행정·세무																	
	전산·통신																	
9 급	소 계	16	5	2	1	2	2	4	15	2	3	2	4	1	2	1		
	행정	4		1		1	1	1										
	세무																	
	사회복지	7	5	1	1													
	전산																	
	공업	2				1	1		1					1				
	농업																	
	녹지																	
	보건	1						1										
	환경	2						2										
	시설								14	2	3	2	4		2	1		
	방송통신																	
	기능직 계		21	1	2	1	4	1	2	10	24		11		1	7	2	3
6 급	소 계	1						1	1					1				
	전기																	
	기계																	
	조무	1						1										
	운전																	
	사무								1					1				
선박항해																		
7 급	소 계	5					1	4	1					1				
	통신																	
	기계	1						1										
	선박기관																	
	조무	1						1										
	운전	2						1	1									
	사무	1						1	1					1				
선박항해																		
8 급	소 계	5				1	1		3	8		3		4	1			
	통신								2					1	1			
	전기								1		1							
	기계	3				1		2	1					1				
	선박항해																	
	선박기관																	
	조무	1					1											
	전화상담																	
건축																		

	운전	1						1	4		2			2			
	위생																
	사무																
9 급	소 계	9	1	2	1	2		1	2	8		4			1	1	2
	통신																
	전기	1							1	2		2					
	기계	1		1						1		1					
	조무																
	전화상담																
	운전	1	1														
	열관리																
	위생	1							1								
	사무	5		1	1	2		1		5		1			1		2
10 급	소 계	1				1				6		4		1			1
	운전									1		1					
	기계									1		1					
	조무									1		1					
	사무	1				1				3		1		1			1
별정직 계		7			3	2		2									
6 급	소 계	1				1											
	홍보연구원																
	비서																
	문화재연구원	1				1											
7 급	소 계	6			3	1		2									
	보건위생감시원	2						2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박물관운영요원	1				1											
	산업인력요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기관별		합계	주민 생활 지원 국계	환경 위생 과	건설 교통 국계	건설 과
직급별	직렬별					
총 계		718	169	32	165	33
정무직계		1				
일반직 계		609	141	28	141	22
6급	소계	152	35	7	36	6
	행정▪환경	3	3	2		
		-			-	-
7급	소계	208	46	11	43	6
	행정	88	16	1	11	2

[별표1]

기관별		합계	주민 생활 지원 국계	환경 위생 과	건설 교통 국계	건설 과
직급별	직렬별					
총 계		718	167	30	167	35
정무직계		1				
일반직 계		609	139	26	143	24
6급	소계	152	34	6	37	7
	행정▪환경	2	2	1		
	행▪환▪시	1			1	1
7급	소계	208	45	10	44	7
	행정	88	15	-	12	3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2년 1월 2일

군산시 훈령 제286호

##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과 등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식품안전계장, 자전거정책계장”을 “식품안전계장”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중 “환경정책계장·자전거정책계장은 각각”을 “환경정책계장은”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중 “도시조명계장”을 “도시조명계장, 자전거정책계장”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중 “도시조명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도시조명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자전거정책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환경위생과) ① 환경위생과에 환경정책계장, 기후환경계장, 환경관리계장, 공중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u>식품안전계장</u>, <u>자전거정책계장</u>을 둔다.</p> <p>② <u>환경정책계장·자전거정책계장</u>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기후환경계장·환경관리계장은 각각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공중위생계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식품안전계장은 지방보건주사로, 식품위생계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식품위생주사로 한다. &lt;본조 2010.07.15&gt;</p>	<p>제26조(환경위생과) ① ----- ----- ----- <u>식품안전계장</u>-----.</p> <p>② <u>환경정책계장</u>은 ----- ----- ----- ----- ----- ----- ----- ----- ----- -----.</p>
<p>제29조(건설과) ① 건설과에 도로관리계장, 도로계획계장, 도로시설계장, 농업개발계장, 광고물계장, <u>도시조명계장</u>을 둔다. &lt;개정 2010.12.24&gt;</p>	<p>제29조(건설과) ① ----- ----- ----- -----, <u>도시조명계장</u>, <u>자전거정책계장</u>-----.</p>

현 행	개 정 안
<p>② 도로관리계장·광고물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로계획계장·도로시설계장은 각각 지방시설주사로, 농업개발계장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로계획계장·도로시설계장은 각각 지방시설주사로, 농업개발계장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시조명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lt;개정 2010.12.24&gt;</p>	<p>② ----- ----- ----- ----- ----- -----, 도시조명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자전거정책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p>

군산시 공고 제2011-2311호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월 2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개정 권고에 따라 이·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통장 임명시 상한 나이 제한 규정 폐지(안 제2조)

➤ 25세 이상 70세 이하인자 ⇒ 25세 이상인자

나. 상한 나이 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배치되는 조항 삭제

➤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삭제(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 제3항 삭제(이·통장 임기 중에 70세에 도달하여도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 제5조 삭제(이·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8, 팩스450-434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전화 450-42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25세 이상 70세 이하인자”를 “25세 이상인자”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 한다.

제5조를 삭제 한다

제6조에서 제17조를 제5조에서 제16조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신설된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중에서 리·통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임명할 수 있다.</p>	<p>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 ----- ----- ----- ----- ----- 25세 이상인 자 ----- -----, &lt;단서 삭제&gt;</p>
<p>제4조(이·통장의 임기) ③ 이·통장 임기 중에 70세에 도달하여도 잔여임기를 보장한다.</p>	<p>제4조(이·통장의 임기) ③ &lt;삭 제&gt;</p>
<p>제5조(이·통장의 정년) 이·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조(이·통장의 정년) &lt;삭 제&gt;</p>
<p>제6조 ~ 제17조</p>	<p>제5조 ~ 제16조</p>
<p>제7조(복무) ② 이·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p>	<p>제6조(복무) ② ----- 제5조 ----- ----- ----- ----- -----,</p>

## 군산시 고시 제2011-92호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2월 30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2) 명 칭 : 군산 C.C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 4,240,089㎡ (변경없음)
  - 2) 규 모 : 81홀(회원제 18홀, 대중제 63홀)
    - 토지이용계획 : 붙임참조
    - 시설배치계획 : 붙임참조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레저산업(주) 대표 강신석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6단계 분할(6,7단계) 및 7단계 9개월 연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대중제 27홀 (‘04.06.~’06.02.) A=1,571,961㎡	대중제 9홀 (‘04.06.~’06.08.) A=410,875㎡	회원제 18홀 (‘04.06.~’07.01.) A=670,293㎡	대중제 18홀 (‘06.05.~’08.01.) A=606,563㎡	대중제 9홀 (‘06.05.~’09.12.) A=292,057㎡	숙박시설 (‘09.10.~’11.12.) A=19,888㎡	부대시설 (‘09.10.~’12.9.) A=668,45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게재 실음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성 비 (%)	단 계 별 사 업 추 진 계 획							비 고	
					1 단계 대 중 27홀	2 단계 대 중 9홀	3 단계 회 원 제 18홀	4 단계 대 중 18홀	5 단계 대 중 9홀	6 단계 숙박 시설	7 단계 부 대 시설		
사 업 기 간	2004.6.22 ~ 2011.12.31	2004.6.22 ~ 2012.9.30			2004.6.22 ~ 2006.2.28	2004.6.22 ~ 2006.8.31	2004.6.22 ~ 2007.1.31	2006. 5.31 ~ 2008. 1.	2006. 5.31 ~ 2009.12.31	2009.10.31 ~ 2011.12.31	2009.10.31 ~ 2012.9.30		
총 계	4,240,089	<b>4,240,089</b>	-	100%	1,571,961	410,875	670,293	606,563	292,057	19,888	668,452		
체육 시설	소 계	1,062,520	<b>1,063,501</b>	<b>981</b>	25.08%	363,546	123,218	200,924	230,553	113,470	1,881	29,909	
	티	74,521	<b>74,521</b>	-		30,931	7,550	12,002	16,007	8,031	-	-	
	그린	58,952	<b>58,952</b>	-		23,335	6,428	11,327	11,926	5,936	-	-	
	빙커	66,134	<b>66,134</b>	-		6,571	3,919	26,642	19,160	9,842	-	-	
	페어웨이	483,330	<b>483,330</b>	-		165,247	59,170	85,549	114,007	59,357	-	-	
	러프	346,509	<b>346,509</b>	-		136,357	46,151	64,244	69,453	30,304	-	-	
	골프연습장	30,000	<b>29,909</b>	<b>-91</b>		-	-	-	-	-	-	29,909	
	연습그린	3,074	<b>4,146</b>	<b>1,072</b>		1,105	-	1,160	-	-	1,881	-	
건축 시설	소 계	103,799	<b>85,969</b>	<b>-17,830</b>	2.03%	38,644	6,330	11,175	890	350	9,645	18,935	19개 동
	클럽하우스	45,654	<b>45,654</b>	-		37,894	-	7,760	-	-	-	-	2개 동
	숙박시설	27,524	<b>9,645</b>	<b>-17,879</b>		-	-	-	-	-	9,645	-	1개 동
	휴게소	2,947	<b>2,947</b>	-		750	250	707	890	350	-	-	9개 동
	관리동	5,721	<b>5,721</b>	-		-	3,013	2,708	-	-	-	-	3개 동
	수위실	130	<b>179</b>	<b>49</b>		-	-	-	-	-	-	179	1개 동
	가스저장창고	150	<b>150</b>	-		-	-	-	-	-	-	150	1개 동
	창고	2,100	<b>2,100</b>	-		-	2,100	-	-	-	-	-	1개 동
	지원용지	18,606	<b>18,606</b>	-		-	-	-	-	-	-	18,606	
	가압펌프실	967	<b>967</b>	-		-	967	-	-	-	-	-	1개 동
공공 시설	소 계	239,625	<b>234,379</b>	<b>-5,246</b>	5.53%	76,355	13,386	37,312	38,900	12,013	8,362	48,051	
	골프장주차장	69,000	<b>60,913</b>	<b>-8,087</b>		17,000	-	9,706	13,628	-	6,263	14,316	
	오수처리장	1,000	<b>1,742</b>	<b>742</b>		700	-	-	-	-	-	1,042	
	가스저장탱크	(150)	<b>(150)</b>	-		(150)	-	-	-	-	-	-	지하매설
	정수시설 상수탱크	(210)	<b>(210)</b>	-		(210)	-	-	-	-	-	-	지하매설
	유류저장탱크	(98.2)	<b>(98.2)</b>	-		-	(55)	(43.2)	-	-	-	-	지하매설
	가압장	100	<b>100</b>	-		100	-	-	-	-	-	-	
	진입도로 (부지내)	12,500	<b>14,599</b>	-		12,500	-	-	-	-	-	-	
	관리도로	35,121	<b>37,220</b>	<b>2,099</b>		2,428	-	-	-	-	2,099	32,633	
	도로	96,710	<b>96,710</b>	-		38,477	7,085	22,009	17,126	12,013	-	-	
응급도로	25,194	<b>25,194</b>	-		5,150	6,301	5,597	8,146	-	-	-		
녹지 시설	소 계	2,834,145	<b>2,856,240</b>	<b>22,095</b>	67.36%	1,093,416	267,941	420,882	336,220	166,224	-	571,557	
	묘포장	4,418	<b>4,418</b>	-		-	-	-	4,418	-	-	-	
	복원녹지	1,008,969	<b>1,044,163</b>	<b>35,194</b>	24.63%	362,902	119,100	143,982	157,153	63,981	-	197,045	
	원형보존녹지 (구)	1,595,239	<b>1,582,140</b>	<b>-13,099</b>	37.31%	681,478	145,584	173,550	129,238	77,778	-	374,512	
	원형보존녹지 (임)	225,519	<b>225,519</b>	-	5.32%	49,036	3,257	103,350	45,411	24,465	-	-	

■ 시설계획

(단위 : m<sup>2</sup>)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비고	
				1단계 (대중27홀)	2단계 (대중9홀)	3단계 (회원제18홀)	4단계 (대중18홀)	5단계 (대중9홀)	6단계 (숙박시설)	7단계 (부대시설)		
체육시설	1 체육시설	30,181m 325par	30,181m 325par	-	10,240m 109par	3,469m 36par	6,687m 72par	6,633m 72par	3,152m 36par	1개소	30타석	
	티	363개소	363개소	-	137개소	43개소	77개소	72개소	34개소	-	-	
	그린	82개소	82개소	-	27개소	9개소	18개소	19개소	9개소	-	-	
	병커	192개소	192개소	-	51개소	22개소	63개소	36개소	20개소	-	-	
	페어웨이	90개소	90개소	-	28개소	9개소	21개소	20개소	12개소	-	-	
	리프	117개소	117개소	-	29개소	11개소	30개소	30개소	17개소	-	-	
	골프연습장	30타석	30타석	-	-	-	-	-	-	-	-	30타석
연습그린	5개소	5개소	-	3개소	-	1개소	-	-	1개소	-		
건축시설	2 건축시설	28,949.10	28,953.99	4.89	10,560.13	2,223.10	6,565.76	288.60	102.33	8,411.79	805.28	19개동
	클럽하우스	15,493.63	15,493.63	-	10,283.45	-	5,210.18	-	-	-	-	2개동
	숙박시설	8,406.90	8,411.79	4.89	-	-	-	-	-	8,411.79	-	1개동
	휴게소	1,014.95	1,014.95	-	276.68	96.00	251.34	288.60	102.33	-	-	9개동
	관리동	2,913.53	2,913.53	-	-	1,070.78	1,104.24	-	-	-	741.51	3개동
	수위실	16.13	16.13	-	-	-	-	-	-	-	16.13	1개동
	가스저장창고	47.64	47.64	-	-	-	-	-	-	-	47.64	1개동
	창고	816.08	816.08	-	-	816.08	-	-	-	-	-	1개동
	가압펌프실	240.24	240.24	-	-	240.24	-	-	-	-	-	1개동
공공시설	골프장주차장	1048대	1048대	-	304대	-	194대	299대	19대	122대	110대	
	연습장주차장	-	-	-	-	-	-	-	-	-	-	
	오수처리장	620m <sup>3</sup> /1일	620m <sup>3</sup> /1일	-	500m <sup>3</sup> /1일	-	-	-	-	-	120m <sup>3</sup> /1일	
	가스저장탱크	20TON	20TON	-	20TON	-	-	-	-	-	-	지하 매설
	정수시설 상수탱크	500m <sup>3</sup> /1일 100TON	500m <sup>3</sup> /1일 100TON	-	500m <sup>3</sup> /1일 100TON	-	-	-	-	-	-	지하 매설
	유류저장탱크	12,000L	12,000L	-	-	7,000L	5,000L	-	-	-	-	지하 매설
	가압장	252m <sup>3</sup> /1일	252m <sup>3</sup> /1일	-	252m <sup>3</sup> /1일	-	-	-	-	-	-	
	진입도로 (부지내)	B=18.5m 675m	B=18.5m 675m	-	B=18.5m 675m	-	-	-	-	-	-	
	관리도로	B=4m 607m	B=4m 607m	-	B=4m 607m	-	-	-	-	-	-	
		B=6m 5,449m	B=6m 5,449m	-	-	-	-	-	-	-	B=6m 5,449m	
-		B=6.5m 221m	B=6.5m 221m	-	-	-	-	-	B=6.5m 221m	-		
도로	B=2.9m 33,348m	B=2.9m 33,348m	-	B=2.9m 13,268m	B=2.9m 2,443m	B=2.9m 7,589m	B=2.9m 5,906m	B=2.9m 4,142m	-	-		
응급도로	B=3m 8,398m	B=3m 8,398m	-	B=3m 1,717m	B=3m 2,100m	B=3m 1,866m	B=3m 2,715m	-	-	-		
녹지시설	4 녹지시설	2,834,145	2,856,240	22,095	1,093,416	267,941	420,882	336,220	166,224	-	571,557	
	묘포장	4,418	4,418	-	-	-	-	4,418	-	-	-	
	복원녹지	1,008,969	1,044,163	35,194	362,902	119,100	143,982	148,058	63,981	-	197,045	
	원형보존녹지 (구거)	1,595,239	1,582,140	-13,099	681,478	145,584	173,550	138,106	77,778	-	374,512	
원형보존녹지 (임야)	225,519	225,519	-	49,036	3,257	103,350	45,638	24,465	-	-		

군산시 고시 제2011-94호

#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규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30. ~ 2012. 1. 13.

군 산 시 장



### 1. 고시내용

- 도로명부여 : 뜰아름길, 경장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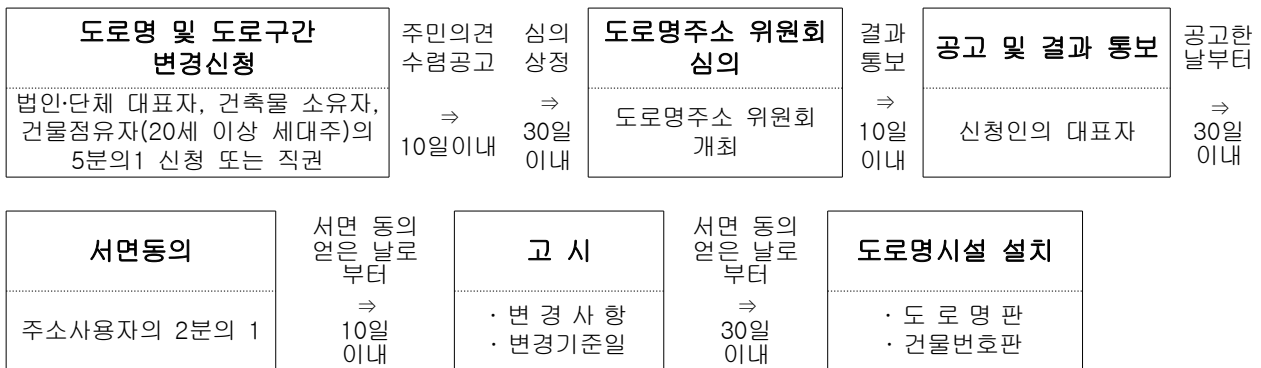
신규 도로명	도로명 부여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변경 : 큰골길, 남내안길

변경 전	변경 후	도로명 변경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2. 고시기간 : 2011. 12. 30 ~ 2012. 1. 13. (15일간)

### 3. 변경절차



군산시 고시 제2011-9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28.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나운 덕암하이빌 신축공사(분양)
2. 사업주체 : 군산시 미룡동 440-1파스텔로빌딩 203호  
(유)하이스종합개발 대표 김준영
3. 사업위치 : 군산시 나운동 763-1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1,198㎡
  - 나. 건축면적 : 671.59㎡
  - 다. 연 면 적 : 2,768.99㎡
  - 라. 건축규모 : 아파트 1동, 6층, 38세대
    - 63.5872㎡형(전용면적 : 45.6824㎡) 4세대
    - 69.7285㎡형(전용면적 : 50.2144㎡) 32세대
    - 116.3349㎡형(전용면적 : 84.542㎡) 1세대
    - 116.9397㎡형(전용면적 : 84.966㎡) 1세대
  -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바. 사업비 : 4,698,800천원
  - 사. 사업기간 : 2011. 3. 30 ~ 2012. 2. 28
5. 주요변경사항(사업주체변경)
  - 변경전 : (유)하이스종합건설 대표 김정철
  - 변경후 : (유)하이스종합개발 대표 김준영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063-450-4228)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1-96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대표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 된 대표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30. ~ 1. 13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군산시 개정면 번영로 831외 49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변경 : 군산시 나포면 서지길 23외 7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폐지 :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57-10외 4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대표지번 변경 : 군산시 개정면 동화길 17외 15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군산시 고시 제2011-9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군산시 산북동 356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전북도 토지주택과-22229(2011.11.15)호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2월 30일

1. 취소 사유 : 주택건설 사업계획(전북도 2005-8호) 승인 취소 [자진취소]

2.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3562번지의 3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명 칭 : 산북동 더샵 아파트 도로 확·포장 공사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취 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중로 2-70	15	40	15	40	274.1	8m→15m 폭원확장
	소로 2-358	8~14	400	8~14	124	400	8m→14m 폭원확장
소 계						674.1	

## 5.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25-1번지

2) 사업시행자 성명 : (유)옥성산업개발 대표 이정희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 인가일 ~ 2007. 11. 30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산북동	3562	대	274.1	274.1	(유)옥성 산업개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25-1번지			
2	“	1-15	임	265	265	(유)옥성 산업개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25-1번지			
3	“	1-32	창	68	68	(유)옥성 산업개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25-1번지			
4	“	1-33	임	67	67	(유)옥성 산업개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25-1번지			
	소계	4필지		674.1	674.1					

## 8. 관계도서 : 기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1-98호

## 군산시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에 따라 건물 소유자 부담으로 건물번호판 제작 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 1. ~ 2012. 1. 15

군 산 시 장



- 결정기준일 : 2012년 1월1일
-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 길급 : 7,300원
  - 로급 : 12,500원
- 납부방법 : 군산시 수입증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1-99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29.

군 산 시 장

- 1. 사업명 : 참좋은아파트 신축
- 2. 사업주체 : (주)건강건설 대표 이홍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3-1번지, 참좋은아파트 101호
- 3. 사업위치 : 전북 군산시 경장동 511-3번지
- 4. 대지면적 : 변경없음
- 5. 주택건설규모 : 변경없음
- 6.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주체	(주)건강종합건설 대표 김일심	(주)건강건설 대표 이홍재	명칭변경 (2011. 3.01)
시 공 자	알디엠산업개발(주) 대표 김일심	변경없음	
설 계 자	코아건축사사무소	청명건축사사무소 정상중	
사업기간	2008. 1 ~ 2009. 6	2008. 1 ~ 2013. 5	
사 업 비	17,749,450천원	29,979,069천원	

- 7.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0-612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1-100호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30

##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0 - 39 (2011.12.28)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주소 성명 : 붙임문서 참조
- ③ 허가목적 : 붙임문서 참조
- ④ 허가장소 : 붙임문서 참조
- ⑤ 면 적 : 붙임문서 참조
- ⑥ 허가기간 : 붙임문서 참조
- ⑦ 붙 임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승인)증. 끝.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허가연월일	신 청 인	허가 번호	신 청 위 치	점용면적 (㎡)	점용목적	허가기간
2011.12.28	편도영	2010 -3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남방 5km 지점	500	침몰선 해 저탐사 및 매장물 발 굴	'12. 1. 1~ '12. 8. 31 (8개월)

군산시 고시 제 2011-102호

##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동법시행령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시설물,부수시설물,임목,어업권,광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지하자원(광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군 산 시 장

다 음

1. 2012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2.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도 열람

※세부내용은 군산시청 세무과에 비치※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1-103호

## 2012년도 군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및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 군 산 시 장

1. 제 목 : 2012년도 군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 근 거 :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 2012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002,293 원/m<sup>3</sup>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문의처 :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063-450-4536)

군산시 공고 제2011-2109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구)군산역~중동4거리)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구)군산역~중동4거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2월 16일

-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367-1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구)군산역~중동4거리[대로3-4호선] 도로개설	대로 3-4	25	720	25	290	11,657	미개설음
소 계					290	11,657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4.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0. 7. ~ 2011. 11. 16

5.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1-2110호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해망~연안도로(구암선연결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해망~연안도로(구암선연결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2월 16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구암동 276-20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해망~연안도로 (구암선연결도로) 개설공사	중로 1-4	20	745	20	745	15,740	미개설 없음
소 계					290	15,740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4.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05. 12. ~ 2011. 11. 24

5.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1-2281호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군산의료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군산의료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2월 23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지곡동 29-1외 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군산의료원)
  - 나. 명 칭 : 군산의료원 건축물(본관동) 증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49,665.9m<sup>2</sup>
  - 가. 건축규모 : 당초 25,385.03m<sup>2</sup> ⇒ 변경 26,253.09m<sup>2</sup> (증 868.06m<sup>2</sup>)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지곡동 29-1
  -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양연식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1. 6. ~ 2011. 12. 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1-2300호

##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공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17조에 의거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같은 조례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

## 군 산 시 장

1. 공인 등록사유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연월일 : 2011. 12. 20.
3. 등록공인 및 인영(2건)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나운2동	군산시 나운2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2.1cm)
수송동	군산시수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0cm*2.0cm)

군산시 공고 제2011-2345호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계획 공고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2일

군산시장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계획 : 40호
- 대상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
- 지원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 ◆ 도조례 시행(2010. 12. 31)전에 기존 장기임대주택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기간
  - ◆ 최대 6년(1회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호당 20,000천원 한도로 한다.
- 지원방법 :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에 지급
- 신청접수: 2012. 1월~12월중(년중) /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2층)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 신청자수가 공급물량 초과시 대상자 선정기준

-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면적 (평)	14㎡ (4.2)	26㎡ (7.8)	36㎡ (10.8)	43㎡ (13.0)	46㎡ (13.9)	55㎡ (16.6)

### ② 장애인 가구

-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 ③ 다자녀 가구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

## ○ 신청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붙임)

- ◆ 주민등록등본
- ◆ 수급자증명서
-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 개인별로 휴대폰 문자 발송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 ◆ 건축과 450- 4474.6249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현 거주지) :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m<sup>2</sup>
- 연 락 처 :
- 가족사항(동거인) : 명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성명 : (장애등급 : 급)

## 희망주택 유형

- 장기임대주택 단지명 :
- 입주희망 평형 : m<sup>2</sup>
- 임대보증금 :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 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 조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3.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